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8,500,000	11,355,000
일반회계	363,800,000	10,914,000
특별회계	14,700,000	441,000
기타특별회계	14,700,000	441,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946,000	58,3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6,000	60,18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633,000	18,9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00,000	39,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50,000	10,5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596,000	167,880
치수사업특별회계	2,249,000	67,470
기반시설특별회계	620,000	18,6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13,01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